##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1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철규・박상웅・고동진

서일준 · 김선교 · 박준태

조배숙・강승규・이인선

송언석 · 유상범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물건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이와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 문제가 있어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 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 등).

법률 제 호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127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하거나"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수출 또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	3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기·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u>대</u>		
· <u>대여 또는</u> 수입하거나	<u>여・수출 또는</u>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다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			
산한 물건을 사용・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u>대여·수출 또는</u>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			

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u>대여 또</u>
  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
  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

  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
  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1. ~ 4. (생 략)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

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 (=1 -11 -1 -1 A)
1. (현행과 같음)
2
<u>대여·수출 또는</u>
3
<u>대여·수출 또는</u>